

경운대학교 성희롱·성폭력방지조치에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(구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7조의2)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「학칙」을 적용받는 자에게 적용한다. 이는 교수(외국인교수, 시간강사 등), 직원,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성희롱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2호(구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3조4호)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제4조(총장의 책무) ①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·운영,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,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,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, 예방교육 참석,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성희롱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성희롱고충상담창구)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센터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(이하 “고충상담창구”라 한다)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,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, 직원, 외부 전문가(성희롱, 양성평등)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.

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3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

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방교육) ①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 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
2.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
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
6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-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,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.
- 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학생처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 내용, 교육 사진,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고충 신청)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 ② 고충상담창구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충상담창구에 이송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
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고충처리위원회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 ④ 조사 과정에서 학생처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 ⑤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.
 ⑥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전자우편,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
제11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총장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총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 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.
- ③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,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- ④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조사결과와 보고 등)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14조(징계) ①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- ③ 성희롱 등을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,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성희롱방지조치에관한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